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75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전혜숙·강민정·김민철

김정호 · 김회재 · 민홍철

박광온 · 서영교 · 안규백

윤후덕 · 이병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 한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 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 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	<삭 제>

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 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 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 다.